

[사 건 명] 행심 2017 - 39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중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9.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가해에 따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2017. 08. 28. 등교시간 및 조회시간 이후 서로 욕설을 하는 등 다툼이 발생 하였고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 1교시 이후 □□□와 △△△, 점심시간에 □□□와 ▽▽▽이 서로 욕설 및 신체접촉이 발생 하였고, 청구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탈의실 벽을 쳐서 손에 반깁스를 하였으며 2017. 09. 01. 재차 청구인과 □□□ 사이에 서로 욕설 및 다툼이 발생하였다.

나. 2017. 09. 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그 결과 피청구인으로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함)을 받았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은 □□□에게 초등●년부터 중학생인 지금까지 욕설과 폭력, 협박으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받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 처분되어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자로 기록이 된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다.
- 나. 2017. 8월부터 □□□의 언어폭력과 신체접촉 폭력의 정도가 점점 심해져 담임교사가 청구인 부모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에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는데 담임교사와 다른 과목 선생님들의 진술, CCTV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 다. 청구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모범상과 선행상을 받으며 학교 생활을 모범적으로 착실히 해왔는데 이번일로 피해자임에도 생활기록부에 가해자 처분 된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전담경찰관이 입회하지 않아 위법이라 주장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의거 총 10명의 위원 중 8명이 참석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였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가해처분 하였다.
- 나.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확보한 관련학생 및 목격자 진술, CCTV영상

등 모든 자료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러한 제반 자료와 관련학생 당사자 및 보호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청구인에게 가해자 처분 조치 하였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2. 인정사실

청구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청구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및 증거자료, 청구인의 모 및 피청구인의 대리인 구술심리결과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피해자와의 다툼 가운데 ‘미친년, 또라이’ 등의 욕설을 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탈의실 벽을 치고, 이로 인하여 다쳐 반깁스를 하였고, 이후 위와 같이 한 반깁스를 풀어 피해자에게 던지려 했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바,

전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일정정도 피해자의 지속적인 가해행위에 대하여 방어적인 의미로 이 사건 행위들을 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다툼 가운데 ‘미친년, 또라이’ 등의 욕설을 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탈의실 벽을 치고, 반깁스를 풀어 피해자에게 던지려 했던 이 사건 행위들은 모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재량의 남용·일탈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고,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

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본 사안의 경우 전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일정정도 피해자의 지속적인 가해행위에 대하여 방어적인 의미로 이 사건 행위들을 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청구인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과 피해자 사이에 화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안이 다시 발생하고 추가적인 다툼이나 갈등이 발생할 우려되므로 접촉 및 보복 행위 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피해자와 거리를 두어 이를 사전에 예방함과 더불어 반성과 변화의 기회를 삼아 청구인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고 이를 계기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볼때,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은 적절하다 할 것이며,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결 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청구인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